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商標拒絕不服

〈大法院 第 2 部 判決〉 (1989. 4. 25)

事件番號 : 86후 43

裁判長 : 김 주 한

關與法官 : 배 석 · 김 상 원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스페인 뉴트렉스파 소시에떼아노임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特許廳長
3. 原 審 決 :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6. 1. 31字 1984年 抗告審判(絶) 第1010號
4. 主 文 : 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에 관하여 판단한다.

商標法 第9條第1項第11號 소정의 “商品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商標”라 함은 그 商標自體에 그 指定商品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商標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9.1.24선고, 87후 121판결 참조), 이러한 商標를 登錄할 수 없게 한 商標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관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72.5.30선고, 72후 1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콜라”라는 특정상품인 음료수가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 한편, 本願 商標는 英文字 “COLA CAO VIT”만으로 구성된 文字 商標이므로, 本願 商標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 코코아, 밀크코오피, 대용코오피, 밀크코코아에 사용케 하면, 일반수요자는 本願 商標의 (COLA) 부분의 표시로 인하여 위 지정상품을 콜라성분

이 포함된 상품 또는 콜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다른 여러나라에서 콜라를 그 성분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本願 商標가 登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審判請求人(出願人)의 지정상품보정은 商標法 第14條의2第2項 단서가 정한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결이유는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上告理由에서 들고있는 당원 判決들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商標全體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한 것으로 원심결이유가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關與 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㉟>